

부천시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 지원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03년 5월 2일 부천시장 제출

나. 회부일자 : 2003년 5월 2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104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4차 건설교통위원회(2003년5월14일)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요지

(제안설명자 : 청소사업소장 박한권)

□ 제안이유

- 1995. 5. 6부터 운행해온 중동소각장의 주민지원기금을 소급출연하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적용해온 주민지원기금 출연금 기간만료에 따라 관련조문을 삭제하고자 함.

□ 주요골자

- 1999년부터 2002년까지 매년 균등분할하여 한시적으로 출연하던 출연기금 관련조항을 삭제함(안 제7조제2항)

3. 주요결의 및 답변 요지 : 없 음

4. 토론요지

가. 찬성토론 : 없 음

나. 반대토론 : 없 음

5. 심사결과

○ 원안의결

6. 소수의견의 요지

○ 없 음

7. 기타필요한 사항

○ 없 음

부천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30호
의결연월일	2003.5.15 (제104회)

제출년월일 : 2003. 5. 2

제 출 자 : 부천시장

□ 제안이유

- 1995. 5. 6 부터 운영해온 중동소각장의 주민지원기금을 소급출연하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적용해온 주민지원기금 출연금 기간만료에 따라 관련조문을 삭제하고자 함

□ 주요골자

- 1999년부터 2002년까지 매년 균등분할하여 한시적으로 출연하던 출연기금 관련조항을 삭제함 (안 제7조제2항)

부천시조례 제 호

부천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부천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을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7조(주민지원기금조성) ① (생략) 1.~3.(생략) ②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출연금중 정기출연금은 1999년부터 2002년까지 200백만원으로 하되 매년 균등하게 출연하며, 최초출연금은 다음각호의 방식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하고, 적용계수는 250백만원 이하로 하며, 중동소각장에 한하여 적용한다.</p> $\text{출연금} = \frac{\text{소각시설용량(톤/일)}}{100(\text{톤/일})} \times \frac{\text{간접영향권내세대수}}{1,000\text{세대}} \times \text{적용계수}$ <p>③ (생략)</p>	<p>제7조(주민지원기금조성) ①(현행과 같음) 1.~3.(현행과 같음) ② <삭제></p> <p>③ (현행과 같음)</p>